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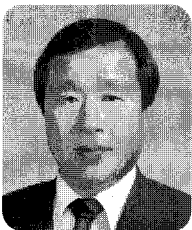


특 집

본 권도에 접어든 양돈사조금제도

양돈사조금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우 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추세에 수입축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날로 높아져 가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적·물적교류가 급속히 증대되면서 설상가상으로 그 유입의 근원도 찾지 못하는 가축의 악성전염병이 전 축종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 축산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는 돼지고기 시장을 크게 위축시켰으며, 최근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중국, 미국 등에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금 인플루엔자는 인체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됨으로써 닭과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 시장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광우병과 동은 국내산 쇠고기시장까지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열하여 요리된 가금류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을 해도 소비자들은 의심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의 소비자는 정작 동요하지 않는데, 국내의 쇠고기 시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축산물의 유통이 투명하지 못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박 중 수 교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축가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축산물의 유통의 투명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치와 축산물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의 다양한 소비촉진 활동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은 안정적인 축산물의 시장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시장을 위해 소비자를 설득시키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의 다양한 소비촉



양돈자조금이 성공적으로 추진·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조금의 운영·관리주체인 축산단체와 거출금의 수납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조성된 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의 합리적인 재원조달의 한 방법이 해당 축산물을 생산하는 양축가가 스스로 부담하는 자조금제도이다.

이러한 축산자조금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서 축산지도자들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회를 설득하고, 드디어 2002년 5월 14일 “축산물소비촉진등에 관한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도록 하였다. 동년 11월 14일에는 동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의무자조금제도가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축산자조금법에 근거하여 의무자조금제도를 가장 먼저 추진한 축산분야가 양돈업이다.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여러 축산단체 가운데 맨 먼저 양돈자조금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위원을 선출하였고, 대위원들의 94%라는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2004년부터 농가가 출하하는 비육돈 1두당 400원씩의 자조금을 거두기로 결정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더불어 양돈자조금의 조성 및 지출에 관한 사항, 자조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자조금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자조금관리위원회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구성하였다. 돼지고기의 본격적인 소비촉진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틀을 양돈농가 스스로에 의해서 차분히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양돈자조금제도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이르다. 양돈자조금이 성공적으로 추진·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추진해야 할 절차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금후 양돈자조금사

업의 추진과 관련된 방향을 몇 가지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조금의 운영·관리주체인 축산단체와 거출금의 수납기관이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의원 투표에 의해서 징수기로 결정된 자조금의 납부에 대한 수납을 양돈업자는 돼지의 도축업자나 돈육의 가공업자(이하 수납기관이라 함)에게 위탁하게 되며, 해당 수납기관은 징수된 자조금을 축산단체에 지급하게 된다. 이는 전적으로 도축 및 가공업자인 수납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수납기관은 자조금의 징수업무가 비록 도축 및 가공업무에 추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양돈산업을 함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도축 및 가공업자는 자조금의 징수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원활한 소비촉진 활동을 통해서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촉진되고 시장이 안정된다면, 그 이익이 양돈농가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양돈농가는 물론 돼지의 도축업자와 가공업자 등을 포함한 양돈업의 전후방에 관련된 산업의 이해당사자 모두가 그 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돈농가가 부담하는 자조금의 징수와 송금업무에 도축업자나 가공업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것은 양돈산업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반자적 차원에서 필연적 과제인 것이다. 축산자조금법은 거출금의 100분의 3 이내의 범위 안에서 축산단체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돈업의 전후방 관련산업자 모두가 양돈산업발전을 함께 발전시켜 나간다는 동반자적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는 양돈업자가 수납기관에 지급한 수수료도 사실상 면제된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조성된 자조금이 합리적으로 사용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활동 자금은 자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라 축산단체가 운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회계를 명확히 하고 다른 회계와 독립적으로 구분·계리하여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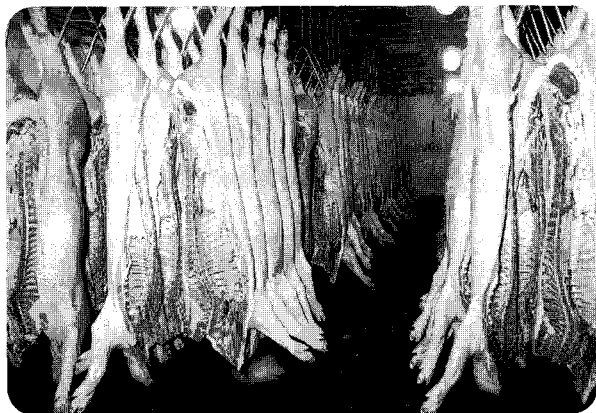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단체는 자조활동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조금이 그 자금을 조성한 양돈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법적 조치가 강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조금에 대한 사용 용도도 돈육의 소비홍보와 양돈업자와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사업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자조금 조성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은 법의 취지에 따라 그 운용·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부분의 자조금이 국내산 돈육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즉, 돈육의 소비홍보 및 광고와 PR사업, 소비자 영양교육, 조사연구, 제품개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장단기적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사용됨으로써 국내산 돈육의 소비확대를 위한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수준의 전문가적 식견과 안목이 요구된다. 따라서 돈육의 유통전문가, 자조금에 대한 전문가, 광고전문가 등을 포함한 돈육



● 수납기관은 자조금의 징수업무가 비록 도축 및 가공업자에 추가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수수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양돈산업을 함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 도축 및 가공업자는 자조금의 징수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자조금은 법의 취지에 따라 그 운용·관리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대부분의 자조금이 국내산 돈육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즉, 돈육의 소비홍보 및 광고와 PR사업, 소비자 영양교육, 조사연구, 제품개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장단기적 계획에 따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사용됨으로써 국내산 돈육의 소비확대를 위한 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해야 한다.



▲ 지난 2002년 11월, 12월 "우리는 돼지고기가 좋다."를 주컨셉으로 제작된 TV광고 방영 장면.

의 소비촉진 활동과 관련된 전문가 집단을 관리위원회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자문기구를 두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상 양돈자조금의 실질적 집행은 사실상 양돈 생산자단체(단독 또는 공동)에 설치되어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지원하게 되는 자조금관리사무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조금관리사무국의 자조금에 대한 업무집행은 양돈업자의 매우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조금관리사무국은 기존의 생산자단체와 업무의 유기적 협조관계는 유지하되, 생산자단체가 갖는 본래의 업무와 자조금업무가 혼돈·중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사

전에 배제시키려는 차원에서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철저한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자조금관리위원회(해당 축산물 소비촉진위원회)를 별개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운영하는 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극소의 독립기구로서 자조금의 관리·운용기구를 법인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 돼지고기 튀김고추볶음(돼지 뒷다리살 이용)

축산법은 농가가 조성한 자조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금액 내에서 축산발전기금을 대응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지원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조금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한다. 양돈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도 수급안정이나 방역사업 등과 같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자조금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일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매 회계년도마다 사용된 자조금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자조금제도는 많은 양돈업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공익에 관계되는 제도임을 고려하여, 자조금사업에 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도·감독 및 협조가 필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정책은 한국적 자조금제도의 바람직한 시금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조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자금 지원은 어느 경우라도 감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매년 정부의 철저한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매 회계년도마다 사용된 자조금의 성과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철저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서 이해 당사자 모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금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대의원의 선출이 매 4년마다 실시되며, 4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양돈업자는 자

조금사업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조금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양돈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말 기준 사육하는 돼지의 4분의 1 이상을 사육하는 양돈업자의 연서를 얻어 양돈단체에 대의원 선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조금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조금사업 추진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자조금사업의 평가결과는 이 같은 자조금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년도의 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매 회계년도마다 조성·사용된 자조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자조금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는 자조금사업의 합리적인 평가를 위한 전문가 집단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양돈자조금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는 바,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돈업자는 물론 생산자단체, 그리고 자조금의 수납기관 등과 같은 양돈산업 관련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로 자기들의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자기들의 편익만 앞세운다면, 양돈자조금사업은 더 이상 발전해 나갈 수 없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양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 양돈산업의 장래는 필연코 밝을 것임을 확신한다. **양돈**